

국제식물보호협약의 관한 단체

< >

국립식물검역소
농림기좌
유
기
열

5. 주요내용

1979년 제20차 FAO총회에서 승인된 국제식물보호협약 개정안은 전문(前文), 15조로 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을 조목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前文) ; 회원국은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병해충을 방제하고 병해충이 국경선 넘어 만연 및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국제적 협력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과 책임) ;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병해충 만연 및 유포를 방지하고 이들의 억제를 촉진하는 공통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법률적, 기술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제2조(범위) ; 각종 대상식물, 대상병해충 및 적용범위등이 명시되어 있다.

식물 ; 모든 생·식물 및 그 부분

식물성산물 ; 모든 식물체(제조되지 않은 것)와 병해충 전파 위험성이 있는 가공된 산물

일반병해충 ; 식물 및 식물성산물에 유해하거나 유해성이 있는 동식물 또는 병원체

◎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관한 고찰 ◎

□ 검역병해충; 미발생되었지만 유입시 국가경제에 중요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발생은 되었지만 분포범위가 좁고 방제가 활발한 병해충

※ 본협약은 대체로 국제교역에 관련된 검역 병해충에만 적용하고 회원국의 국내법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 조(보충협정): 식물보호에 관한 특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협약 범위내에서 보충협정을 들 수 있다.

제 4 조(국립식물보호기관): 회원국은 공식적인 국립식물보호기관을 두어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 생육중 식물, 재배지역 및 수송이나 저장중의 식물과 식물성산물의 검사

2. 국제운송중인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화물 검사

3.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병해충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상태하에서 국제운송중인 상품이나 기타 물품의 화물과 국제교역에 관련이 있는 저장고와 수송시설의 검사와 감독

4. 수출입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화물과 수출입에 관련이 있는 용기 저장소 및 수송시설의 소독

5. 수출식물 위생증명서 발급

6. 식물보호 및 식물검역에 관한 정보의 교환

7. 식물보호 및 식물검역분야의 연구와 조사

제 5 조(수출식물위생증): 회원국은 상대회원국의 식물방역법규에 따라 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본협약에 위배되는 위생증명서를 수입국에 요구해서는 안된다.

검사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유효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공무원만이 하여야 하며 수입국의 관계당국이 받고 접수할 수 있는 수출식물 위생증명서 또는 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6 조(수입요구조건): 식물 및 식물성산물 병해충의 자국내 유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회원국은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식물이나 식물성산물의 수입제한 또는 수입요구조건 설정

2. 특수 식물이나 식물성산물 또는 특수식물이나 식물성산물 화물의 수입금지

3. 특수 식물이나 식물성산물의 화물에 대한 검사

4. 수입요구조건에 위배되는 특수 식물이나 식물성산물의 처리, 폐기 또는 반송

5. 수입금지 또는 제한된 병해충의 목록작성

그리고 국제무역상 장애를 최소화
으로 줄이기 위하여 회원국은 식물
이나 식물성 산물의 수입금지 수입
제한, 수입 요구조건 및 수입지정
장소 등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면 이
를 FAO, FAO지역식물 보호기구 및
모든 회원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
다.

**제 7 조(국제협
력)** ; 회원국은
본협약의 성공적
인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중요한 식물이나
식물성산물의 병
해충의 분포, 발
생 및 만연과 이
들 병해충의 효
율적인 방제방법
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존사
설과 장비를 충
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 경계병해충의 방
제를 위한 특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 8 조(지역식물보호기구) ; 회원
국은 지역식물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데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지역식물
보호기구는 그 지역내 식물보호 및
식물검역에 관한 조정기구로서 본협
약 이행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대한 충분한 연구
와 검토를 통하여 식물보호와 식물검역
에 최대한 기여 해야겠다.

야한다.

제 9 조(분쟁의 해결) ; 본협약의
해석이나 응용에 관하여 또는 회원
국간에 수출식물위생증명서 및 수입
요구조건 특히 식물이나 식물성산
물의 수입또는 제한조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정부는
FAO 사무총장에게 분쟁해결을 위
한 위원회를 임
명해 주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그 요청에 따
라 관련정부와 협
의한 후에 FAO
사무총장은 관련
정부의 대표들을
포함한 전문위원
회를 임명하고 동
위원회는 관계국
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하여 그 결
과와 해결책을

FAO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FAO
사무총장은 이를 관계국 정부 및 기
타 회원국에 통지하여 분쟁을 해결
하며 위원회에 소요된 경비는 관계
국 정부가 공동 부담한다.

제10조(중전협정의 대치) ; 본협약
의 발효와 동시에 중전의 협정은 중
결되고 본협약으로 대치된다.

제11조(적용영역) ; 어느 정부는

◎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관한 고찰 ◎

비준, 서명, 가입시 또는 가입후 적용 영역이나 적용영역의 수정 또는 종결등에 관한 선언을 FAO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FAO사무총장은 이 사실을 모든 회원국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비준과 가입) ; 본협약 발효전인 1952. 5. 1일까지는 비준서명에 의하여 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가입문서를 FAO사무총장에게 기탁하므로써 가입할 수 있고 모든 국가는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제13조(개정) ; 회원국이나 지역식물보호기구로부터 개정안이 FAO사무총장에게 접수되면 FAO사무총장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이를 검토하여 만든 개정안을 FAO정기총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개정안은 회원국의 3분의 2가 수락한후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효력발생) ; 본협약은 3개 서명국 정부의 비준과 동시에 당해 정부간에 효력을 발생하고 그 후에는 비준 또는 가입문서의 기탁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종결통고) ; 회원국은 FAO

사무총장에게 어느때나 본협약의 종결통고를 할 수 있으며 FAO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6. 맺는 말

이상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가입국현황, 지역식물보호기구현황, 발달사, 개정배경과 요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논술한 바와 같이 본협약은 모든 국가의 식물보호 및 식물검역 활동의 근원이 되며 이분야의 국제협력 증진과 식량생산 증대 및 자연보호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우리는 국제식물보호협약을 식물이나 식물성산물의 국제간 교역의 장애물로서가 아니라 병해충의 「필터」로서 이해함과 동시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본협약의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 식물보호 및 식물검역의 발달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하겠다.

<끝>

알림

이번 호에 게재할 계획이었던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권원달 교수님의 「내란의 농촌을 돌아보기」(下)는 사정에 의해 다음 호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독자 여러분의 이해 바랍니다.